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8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8. 31.

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1. 9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

가. 제안이유

-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‘이의신청 권리’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의신청 규정 삭제(안 제20조제4항 ~ 제5항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○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

- 안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삭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것임. ‘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한과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
○ 종합 의견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 ‘민원처리법’)은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한 행정참여와 간편하게 행정구제 수단의 기능을 도모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.
- 하지만, 현행 조례에서는 ‘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신청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의 신청의 기한 및 민원인의 통지 의무 사항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권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.
- 「민원처리법」에서 ‘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’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 우위의 원칙에 어긋나서 모순되는 상황임.

따라서, 해당 조항은 그동안 주민의 의사표시 및 행정구제 등의 기능이 과도한 제한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적법·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삭제하는 것이기에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아울러,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공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상위법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다고 판단됨.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	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제20조(심의절차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,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의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